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8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해식・김원이・박상혁

박정현 · 서영교 · 위성곤

유준병 • 이기헌 • 정을호

한병도 · 황명선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가와 지방자치단체는-----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 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 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 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 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 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 <u>가에</u>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u>와 지방자치단체에</u>-----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u>국가는</u>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④ (생 략)
- ⑤ <u>국가가</u> 제1항에 따라 촬영 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 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 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 다.
- ⑥ (생략)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u>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